

제27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009년 3월 27일(금)

심 사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27.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1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3. 23)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이 타시도 보다 적게 지급됨으로 인한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함.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 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 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숙직근무 개시일의 익일</u> <u>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u></p>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